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35
----------	-------

발의연월일 : 2025. 10. 28.

발 의 자 : 박수영 · 서천호 · 김상훈
이인선 · 최은석 · 곽규택
박성훈 · 김재섭 · 김도읍
윤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경제안보 차원의 위험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안보상 긴요한 핵심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공급망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기업 지원을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이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공급망안정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기금 앞 출연 등을 통해 재원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발적 공

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출연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효과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 시 세액공제 제공 근거를 마련함(안 제104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6(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 공제)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내국법인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4조의36(공급망안정화기금</u> <u>출연 등에 대한 세액 공제) 공</u> <u>급망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u> <u>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u> <u>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u> <u>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u> <u>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u> <u>위하여 설치된 「경제안보를</u> <u>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u> <u>법」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u> <u>에 내국법인이 출연하는 경우</u> <u>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u> <u>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u> <u>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u> <u>세에서 공제한다.</u>